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위탁기간 만료(2023. 1. 31.)가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①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
- 규 모 : 대지면적 179m², 연면적 244.98m²(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2층	73.26	교육장(봉제)	
1층	85.86	소회의실, 사무실	
지하1층	85.86	실습실, 교육장	

② 보문동공동작업장

- 위 치 : 성북구 지봉로20길 80
- 규 모 : 대지면적 190.7m², 연면적 331.75m²(지상4층)

○ 시설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4층	48.76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3층	99.99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2층	99.99	교육장 및 공용장비실	
1층	83.01	집적지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패션봉제지원센터, 보문동공동작업장 시설 운영 및 관리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